

세계화와 환경 라운드

Globalization and Green Round

尹 瑞 成*
Yoon, Seo-Sung

1. 환경과 무역의 연계

가. 새로운 국제 질서의 모색과 환경 문제

사회주의와 자유주의 체제간의 극한적인 대립의 시대가 동구권의 개방화 및 사회주의 체제의 폐기, 독일 통일 및 소련 연방의 해체로 소멸되고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냉전의 시대가 인류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졌지만, 이후의 국제 질서가 어떠한 모습으로 구체화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해답은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다. 다만, 이러한 가운데서도 국제 관계의 전면에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몇 가지 특별한 정후들과 국제적 움직임을 주시할 경우 국제 질서 재편의 밑바닥에 흐르고 있는 일반적 경향과 개략적인 모습을 그려 볼 수 있다.

우선, 냉전 시대에 그다지 무게를 갖지 못했던 경제, 무역, 환경, 기술, 정보, 문화 분야가 국제 관계의 핵심 사항으로 대두되고 있고, 이중에서도 특히 국제 무역과 지구 환경 문제가 국제적인 논의의 주된 과제가 되고 있다. 1993년 12월에 타결된 우루과이 라운드는 지적 소유권 보호, 금융 및 서비스 산업과 농산물 개방 등으로 국가간의 무역 장벽을 허물었고, 국제 경제적 측면에서 무한 경쟁 시대를 예고하고 있다.

다음에 들 수 있는 국제 관계상의 변화는 경제권 통합 추세이다. 유럽 연합(European Union), 북미 자유 무역 협정(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아시아-태평양 경제 협력체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의 구성 등은 지역 국가들 간의 경제 및 기술 협력을 촉진하여 역내 국가들 간의 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양극 체제에서 다극화 체제로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

끝으로 악화되는 지구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종 국제 협약과 일부 선진국의 개별 입법에 의한 무역 규제가 증가함에 따라 환경과 무역을 상호 보완적(Mutually Supportive)으로 연계하여 지구 환경도 보호하고, 무역의 공정성도 높이자는 국제적 움직임이 앞으로의 국제 질서 재편의 주된 흐름과 관련하여 주목되고 있다.

나. 환경 라운드의 태동

환경 라운드(Green Round)의 광의의 개념은 흔히 세계 무역의 환경화(Greening of the World Trade)라는 표현에서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환경적으로 건전한 국제 무역 질서의 재편을 주장하거나 무역과 환경을 상호 연계하려는 발전적인 움직임 전체를 포괄하고 있다.

협의의 환경 라운드는 GATT 체제 하에서 제8차 다자간 무역 협상인 우루과이 라운드의 타결과 제9차 이후의 다자간 무역 협상의 대상이 환경 문제가 될 것이라는 예측 또는 이러한 예측을 전제로 한 전망 및 움직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현재 170개에 이르는 국제 환경 협약의 실효성 담보를 위한 무역 규제 수단의 동원이라든지 국제 사회에서 어느 한 나라가 국내 환경 법규에 따른 일반적 무역 규제 또는 자국 영역 외의 환경 문제에 관련

* 환경부 기획관리실장

된 일방적 무역 규제 시도 등의 개념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있다.

환경 라운드(Green Round)는 1991년 10월 미 상원 의원인 맥스 보커스(Max Baucus)가 지구 환경 문제를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위기 의식과 자국의 발전된 환경 기준 및 환경 기술을 이용하여 국제·경제적으로 우위적 위치를 확보하겠다는 의도에서 처음 주장하였다. 환경 라운드의 기본 취지는 GATT 협정 제20조 (b)항과 (g)항이 인간, 동·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서의 무역 제한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확대하여 국제 환경 협약의 실효성 담보를 위한 무역 규제나 환경 상계 관세 부과 등 규제 조치를 취하는 데 있다. 또한, 현재의 GATT 체제가 상품의 교역을 다룸에 있어 제품 생산 과정의 환경 기준 준수 여부를 검토하지 않기 때문에 환경 기준을 지키지 않고 생산된 제품이 교역상 유리함을 갖게 되어 각국의 환경 기준이 저하되도록 조장하고 있기 때문에 GATT가 상품의 가격 뿐만 아니라 생산 과정까지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GATT의 기본 정신이 자유 무역주의 체제 확립에 있는 만큼 GATT가 환경 문제를 고려하여 무역 장벽 설치를 허용할지 아니면 이를 거부할지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으나, 미국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고 지구 생태계 및 인류 공동 자산의 보호는 모든 국가의 공통 과제임으로 어떤 형태로든 환경 라운드의 도래는 불가피 할 것이다.

2. 국제적인 주요 동향

가. 유엔 환경 개발 회의

72년 UN 인간 환경 선언 채택 이후 1992년 6월 유엔 환경 개발 회의(UNCED)가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로에서 126개국의 정상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어 지구 환경 문제에 대한 기본 규범에 합의함으로써 지구 환경 보호와 개발의 동시 달성을 관한 선진국과 개도국의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유엔 환경 개발 회의의 주요 결정 사항은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ESSD)을 위한 〈리우 선언〉과 〈의제 21(Agenda 21)〉을 채택하였고 이의 이행을 평가·감시하기 위하여 지속 개발 위원회(CSD : 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를 설치하여 지구 환경 문제에 대한 유엔의 총괄적 관리 체계를 구축하였다. 한편, 석화연료 사용 규제 원칙을 내용으로 한 기후 변화 협약과 생물종의 다양성 및 유전 자원의 보전을 위한 생물 다양성 협약에 서명하고 산림 보호 및 개발에 관한 기본 원칙인 산림 의정서를 채택하였다.

1993년 6월 제1차 UNCSD 회의에서 각국은 〈의제 21호〉 이행 상황에 대한 평가 계획 수립, 재정 지원, 기술 이전 실무 협의회 구성에 합의하였으며 1995년 5월 제3차 UNCSD 회의에서는 무역과 환경 정책의 연계에 관한 기본 방침 및 작업 방향을 결정문으로 채택하였다.

나. GATT

자유 무역의 신장을 기본 목적으로 하고 있는 GATT는 환경 보호에 관한 뚜렷한 규정을 두지 않은 채 제20조에서 〈인간 및 동식물의 생명과 보건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무역 규제 조치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이 규정만으로는 지구 환경 문제에 적절히 대처할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GATT는 1971년에 구성했다가 운영 실적이 없었던 〈환경과 무역에 관한 작업반〉의 활동을 1991년 연말부터 시작했으며 GATT에 대체하여 설치 될 세계 무역 기구(WTO) 내에 〈환경과 무역의 연계〉를 주관할 〈무역·환경위원회(CTE)〉를 설치하기로 1994년 4월 〈마라케쉬 각료 회의〉에서 결정하였고 동 위원회에서 환경 관련 부과금, 세금 및 상품 요건 등의 국제 무역과 환경 연계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1996년 WTO 각료 회의에 제출할 예정이다.

다. OECD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는 1991년 무역 위

원회와 환경 위원회의 합동 작업반을 구성하고 환경과 무역에 관한 지침을 마련 중에 있는데, 이 지침에는 무역과 환경 정책 사이의 기본 원칙, 무역 규제 방법 및 그 대상, 환경 기준의 국제적 조화, 무역과 환경에 관한 분쟁 해결 등에 관한 내용이 논의되고 있다. 최근에는 무역·환경 전문가 회의를 수시로 개최하여 특히 제품의 생산 공정 및 방법(PPMs), 환경 마크(Eco-Labelling)등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라. ISO

최근 들어 국제 표준화 기구(ISO)는 기업의 전 생산 공정과 제품, 그리고 환경 관련 경영 체제가 환경친화적 인지를 인증해 주는 국제 환경 표준 규격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여 상당한 진전을 이루고 있는 바, 이 제도가 새로운 무역 장벽으로 작용 할 소지를 내포하고 있다.

ISO 규격은 우리의 KS 규격처럼 강제적이 아닌 권장 규격이나 일부 유럽 연합 국가를 중심으로 강제 규격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으며 GATT/WTO의 기술 장벽 협정(TBT)의 회원국들이 국제 표준 규격의 국내 규격과의 일치를 권장하고 있어 향후 ISO 규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제품 및 기업은 국제 무역에서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마. UNEP

그 동안 별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가 최근 <환경과 무역의 연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자 1994년 2월 17일 선진국 및 개도국 18개국이 참여하는 환경 장관 회의를 개최하는 등 무역과 환경에 관한 UNEP 나름대로의 입장 정리를 시도하고 있다.

아울러 UNEP는 유해 화학 물질과 관련하여 산하 기구인 IRPTC(국제 유해 화학 물질 등록 기구)를 통하여 유해 화학 물질의 국가간 교역시 사전 승인 하에서 교역을 허용하는 PIC 제도(사전 통보 승인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3. 논의 내용 및 전망

가. 환경 관세 장벽

환경 기준이 느슨한 국가에서 수입된 제품은 엄격한 환경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국가의 제품에 비하여 일종의 부당한 숨겨진 보조금(Hidden Subsidy)을 받는 것으로 간주하여 환경 기준의 차이만큼 상계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자국 제품의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고, 또한 각 국가에 대한 환경 기준의 강화를 유도하여 지구 환경 보호에도 기여하기 위한 환경 관세 부과 제도의 도입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환경 상계 관세의 적용은 객관적 타당성, 과학적 근거, 각국의 특수성, 환경 개선에의 기여도 등에서 많은 논란의 소지가 있으며 각국의 환경 용량을 무시하고 규제 기준 차이에 의해서만 상계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불합리하다는 주장도 대두되고 있다.

나. 환경 관련 비관세 장벽

a. 기술 장벽

어떤 상품의 기술 명세(표준, 기술 규정)와 기술 명세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인증 제도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무역상의 장벽으로는 특정 제품에 대하여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요건이나 기준을 설정하고 수출국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기술 규정에 의한 무역 장벽과 준수의 강제성은 없으나 제품 수출시 수입국 규격 획득을 요구하는 표준 규격 제도에 의한 무역 장벽, 그리고 자국 시험 검사 기관에 의한 중복적인 검사를 강요하는 인증 제도에 의한 무역 장벽 등이 있다.

미국의 경우, 인간 및 동식물의 보건·안전·위생등에 대해서 정부가 기술 규정에 대한 강제적 기준을 설정하고 준수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유럽 연합(EU)은 표준 및 인증 제도에 우선 순위를 부여하고 있으며 특히, 자동차와 같은 EU의 전략 산업의 경우 세부적 기술 사항까지 각 회원국의 동의를 얻도록 하여 역내 산업을 보호하고 있는

반면 다른 분야는 필수 요건만 정하고 세부적 사항은 민간 표준 기구에 위탁하고 있다.

또한 일본에서는 일본 공업 규격, Q 마크(품질) 및 G 마크(우수 디자인) 등 품질 인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전기 용품, 차량, 생활 용품 등에 대하여 과다한 표시 의무(판매 허가, 형식 승인 등)를 부과하고 있다.

앞으로 선진국은 환경 보호 명목과 함께 기술 우위를 바탕으로 자국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표준 규격, 기술 규정 및 인증 제도와 같은 기술 장벽을 확대 할 전망이다.

b. 공정 및 생산 방법(PPMs)의 규제

무역 규제의 대상을 제품의 성상·성능에 한정 할 것이 아니라 제품의 제조 방법까지도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즉, 수출국이 최적 기준에 미달되는 공정 및 생산 방법에 관한 기준을 갖고 있다면 환경 비용이 수출품 가격에 내재화되어 있지 않아 일종의 Eco-Dumping으로 볼 수 있어 이를 규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특정 국내에서 금지된 PPMs를 제3국이 사용하더라도 그 영향이 제3국에만 한정될 경우 주권 제한 문제가 제기되고 PPMs의 기준의 강요는 각국의 환경 수용 능력 차이를 무시한 것이라는 반론이 제기된다.

현재 통수 산물의 PPMs 차이에 따른 무역 규제를 이미 시행하고 있거나 계획하고 있으며 공산 품까지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있고 특정 공정에 대한 무역 규제 조치가 지구 환경 보전의 목적으로 행해지는 경우 논리적 정당성이 점차 인정되어 가는 추세이다.

c. 특정 제품 및 분야의 적용 규제

농약, PCB, 유해 화학 물질 등 환경 오염을 유발 할 가능성이 있는 특정 제품과 물질의 생산, 사용 및 유통을 사전에 규제하려는 것이다.

이 경우 국내 상품과 수입 상품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한 GATT의 무차별 원칙, 내국민 특혜 원

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으나 앞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특정 성분이나 상품에 대한 무역 규제가 점차 늘어 날 것이다.

d. 포장 폐기물 관리 제도

국가별로 제품 포장의 재질 및 포장 방법 등을 규제하는 것으로서 자국의 규정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수입을 제한하려는 것이다.

또한, 폐기물의 회수·재활용은 수입 업자가 포장 폐기물의 회수 및 처리 의무를 짐으로써 수입 업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여 수출 대상국에 따라 포장 설계를 바꾸어야 하는 등 부담 발생이 불가피 하다.

앞으로 폐기물 처리 문제가 세계 각국 공통의 관심사로 대두됨에 따라 각국의 포장 폐기물 규제는 확대·강화되어 수입품에 대한 무역 장벽 요소로 증대 될 전망이다.

e. 환경 마크 제도(Eco-Labeling)

환경 보호 측면에서 바람직한 상품의 제조 및 구매 유도로 기업체의 환경 보전형 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소비자의 환경 친화적 소비 생활을 유도하여 실질적인 환경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러나, 각 수출국의 기준에 맞는 제품을 생산해야 하는 부담과 수입 국의 환경 마크를 획득하기 위한 시험 절차, 비용 등이 무역 장벽으로 작용 할 소지가 있다.

동 제도는 실질적인 환경 개선 효과가 있으므로 점차 확대될 전망이며, 각 국가에서 개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환경 마크 제도의 통일성을 부여하기 위해 ISO 주관으로 국제 표준화 작업이 추진 중이다.

g. ISO의 환경 경영 표준화

향후 제품, 용역, 기업 조직 및 경영 전반에 대하여 환경 경영 체계, 감사 등 주제별로 국제 표준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앞으로 국제 환경

경영 표준에서 강제 인증 제도로 발전될 가능성이 커 국제 통상 질서의 새로운 국제 규범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 국제 환경 협약에 의한 무역 규제

지구 환경 보호를 위한 국제 협약은 이미 170여 개가 체결되어 있으며 새로운 협약의 체결과 부속 의정서 제정 논의가 진행 중이다.

종래에는 특정 물질의 사용 및 교역 규제 등 특정한 유해 행위 중심으로 규제하였으나 1992년 6 월 리우 회의를 계기로 경제 활동 전반에 대한 규제로 발전하였으며 현재 18개의 국제 환경 협약이 무역 규제를 그 이행 확보 수단으로 포함하고 있다.

기후 변화 협약(1994년 3월 21일 발효)은 향후 부속 의정서 제정에서 각국의 온실 가스 배출 억제 계획의 수립·시행을 요구하고 규제 기준 비준 수국에 대해서는 무역 규제를 취할 가능성이 예상되며, 1995년부터 협의가 시작된 삼림 의정서에는 지속 가능하지 않은 방법으로 생산될 임산물에 대한 교역 규제가 포함될 전망이고, 생물 다양성 협약은 각국의 유전 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인정하고 있어 타국의 유전 자원 이용에 제약을 주게 될 것이다.

라. 지구 환경 보호를 명목으로 한 개별 국가의 일방적 무역 규제

국제 협약의 이행 또는 자국 외의 환경 보전을 명목으로 하는 무역 규제와 외국의 영역 내의 환경 문제를 이유로 한 무역 규제를 가하는 움직임이 선진국에서 일어나고 있다. 특히, 미국은 해양 포유 동물 보호법에 의한 돌고래의 보호를 위한 참치 수입을 규제하고 펠리 수정법(The Pelly Amendment)에 따라 멸종 위기의 생물종 보호에 미온적인 국가에 대해 비특정 제품(Any Product)의 수입을 금지하는 등 일방적 무역 규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EU는 동물 실험으로 개발된 화장품의 역내 수입을 1998년부터 금지하기로 하였다.

이상과 같은 환경과 무역에 관한 국제적인 논의

동향을 종합해 볼 때 날로 심각해져 가는 지구 환경 문제에 대한 국제적 우려와 우루과이 라운드 타결 과정에서 환경 문제가 적절히 다루어지지 못하였다는 비판에 따라 GATT의 차기 라운드로서 <환경과 무역의 연계>는 필연적으로 도래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는 산업의 무역 의존도가 높은데다 환경기준이 아직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느슨하여 국내의 환경 및 경제 정책, 산업 구조 제반에 심각한 파장을 미칠 것이다.

4. 환경 라운드에의 대비

가. 환경 및 산업 정책적 대응

a. 환경 규제 기준 및 경제적 간접 규제 수단의 강화

대기·수질 분야의 오염 물질 배출 허용 기준은 대부분 선진국 수준에 미흡하여 입법 예고된 국내 배출 허용 기준과 국내 기업의 기술 수준, 수용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검토하여 강화 수준, 시기 등을 결정하되 서기 2000년까지는 OECD 선진국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또한 특정 호소 지역 및 오염 심화 지역과 수계별 대기 및 수질 오염 물질 총량 규제 제도의 심사 방안이 준비되고 있다.

그리고, 1983년부터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오염 물질량에 부과금을 부과하고 있고 폐기물 예치금, 폐기물 처리 부담금 제도 등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제도의 합리적 운영에 미흡한 점이 많다. 따라서 부과금 산정 방식을 오염 물질의 배출 총량을 고려한 부과금 제도로 개편하고 폐기물 예치금 및 처리 부담금 요율을 실제 회수 처리 비용 수준으로 점차 상향 조정하며 탄소세 등 환경 세 도입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b. 환경 관련 특정 규정의 강화 및 생산 공정의 개선

국내·외 환경 관련 기술 규정에 대한 GATT/WTO 통보 사항과 분쟁 사례를 검토·분석하여 국내 관련 규정을 보완·강화하되 자동차

배출 가스 및 소음 규제, 환경 마크 제도, 상품 및 포장 폐기물 규제, 생산 공정 및 방법(PPMs) 규제 등에 관한 중점 분석이 필요하다.

기술 장벽(TBT) 협정이 UR의 타결과 함께 GATT/WTO 체제에 정식으로 수용되고 내용도 강화되었으므로 기술 장벽 협정의 제 조항을 분석하여 GATT/WTO 통보 대상 기술 규정을 적시에 통보하고 미국, EU 제국 등 선진국의 기술 규정 내용을 파악하여 이에 대응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 나라에는 도금, 피혁, 제지, 섬유 등 업종의 중소 기업에서 아직 까지 오염 배출이 심한 후진국형 생산 공정을 사용하는 사례가 많은 바, 이를 오염 공정과 산업을 세부적으로 조사·분석하여 관련 사업 부문별 세부 대책과 이들 산업이 필요로 하는 환경 청정 기술 개발과 보급을 위한 장기 종합 계획 수립 작업이 추진되고 있다.

c. 특정 유해 물질 및 제품의 사용 규제

OECD의 관련 가이드 라인과 선진국의 화학 물질 평가, 관리 체계를 검토·분석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며, 화학 물질의 유해성 심사 제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보완하고 환경 오염을 유발하는 화학 물질의 생산, 유통 및 사용에 대한 합리적 규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또한, 생산 공정 및 제품에서 사용되는 특정 물질의 대체 물질 개발 계획의 수립·추진도 필요한 과제의 하나이다.

d. 폐기물 관리 제도의 강화

현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품의 포장 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1993년 8월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수출 상품의 포장 재질이라든가 재활용 용이성 등에서 미흡한 점이 많다. 따라서, 환경에 유해한 물질이 함유된 포장재의 사용 규제를 확대하고 제품별 포장재 사용 형태를 세분화· 다양화하여 환경 친화적인 포장 재질 및 포장 방법의 사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또한, 포장 용기 재사용 대

상 품목과 재사용 비율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특히, 가전 제품 등의 포장에서 많이 사용되는 합성 수지 포장재의 감량화를 추진할 것이다.

생산·유통 단계에서부터 그 제품이 폐기되었을 경우에 회수 및 재활용이 용이하게 되도록 제품의 구조·재질을 개선하고 폐지, 고철 등 폐자원의 재활용 의무 비율의 상향 조정과 폐자원의 재활용 설비를 확충하도록 할 것이다.

e. 환경 청정 기술의 개발 및 환경 산업 육성

환경 청정 기술과 오염 처리 기술의 개발과 이용은 국내 환경 오염의 방지 측면에서나 국제적인 환경 관련 무역 조치에 대응하는 측면에서나 모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G-7 프로젝트 환경 공학 기술 개발 사업의 추진을 통해 1992년~2001년간 총 2,315억 원을 투자하여 대대적인 환경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본과 기술에 여유가 있는 대기업에 대해 청정 기술 개발 계획의 수립을 의무화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유치한 단계에 있는 환경 산업을 국제 경쟁력을 갖춘 유망 수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환경 설비 산업을 첨단 기술 산업으로 지정하고 세제·기술 개발 자금 등 정부 지원 대상 산업체 환경 설비 산업을 포함시킬 계획이다.

f. 환경 친화적 상품 제조 및 기업 경영 유도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개별 공정에서 배출되는 환경 오염 물질의 규제라는 소극적 입장에서 벗어나 환경 오염 부하가 작은 환경 친화적 생산 방식의 도입은 물론 기업 경영 자체를 환경 보전에 비중을 두는 소위 녹색 기업 경영 전략의 채택에 논의의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기업이 제품 설계 등 생산 공정에서부터 근본적으로 오염을 줄이고 기업 활동 전반에 대해 환경 영향을 평가하여 구체적인 환경 개선 계획을 마련하는 자율적 기업 환경 관리 체계를 구축하게 할 것이며, 환경 친화 기업으로 지정되면 배출 시설 허가와 지도 점검 면제 등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나. 적극적인 환경 외교의 전개

지구 환경 문제를 둘러싸고 책임 분담과 규제에 대한 개도국과 선진국의 갈등, 환경 문제의 정확한 원인 조사 및 이의 해결을 위한 지역 국가간 또는 양 당사자 국가간의 입장 차이 등 국제 환경 문제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당면 과제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선 책임있는 국제 사회의 구성원으로써 UNCED, UNEP 등의 지구 환경 문제의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국제 환경 규약에의 능동적 가입 및 이행 사항의 철저로 지구의 생태계 및 환경 보전 운동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 할 것이다.

한편, 책임 분담 및 환경 규제와 관련된 개도국과 선진국 사이의 논쟁 및 갈등 관계에서 신뢰받는 중재자적 지위를 확보하며 동북아 환경 협력 회의 등 지역간 환경 협의체와 중국·일본·러시아 등 인접 국가간의 환경 협력을 꾸준하고 성실하게 전개하여야 한다.

5. 결 어

지구 생태계 및 환경 보전을 위한 국제 무역 질서의 재편 문제는 앞으로 계속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1996년 OECD 회원국의 일원이 될 입장에서 환경과 무역에 관한 국제적 논의의 추이를 예의 주시 분석하고 환경 관련 정보의 획득 및 교류, 환경 기술의 공동 개발, 기술 교환·이전 등을 통하여 우리의 환경 정책과 환경 기준, 기술 수준을 선진화하여야 한다.

나아가 열대 우림의 보호, 야생 동·식물의 보호와 같은 지구 생태계 보전 문제에 국민적 관심과 열의를 가지고 경제 사회 전반의 구조와 문화 형태까지도 과감히 고쳐 가는 각오와 자세로 참여하여 한다.